

'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7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'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함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대상

(토지)

(단위 : ㎡/천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구분	취득면적	소요예산
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(이양면소방차고부지)	675-8	답	788 (238평)	당초	330.5 (100평)	4,000
				변경	788 (238평) (증138평)	11,000 (증7,000)
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(능주면청사부지)	254-12	대	106		106	30,000
	254-13	대	56		56	

(건 물)

(단위: ㎡ / 천원)

건 물 명	소재지	지 번	구 분	사업구분	건축면적	소 요 예 산
농기계 수리 공작실 및 농민 교육용 강당	화순읍 삼천리	623	당 초	신 축	148.5 (45평)	계 : 66,257 국비 : 35,062 군비 : 31,195
			변 경	신 축	198 (60평)	계 : 106,800 국비 : 35,062 군비 : 71,738
도곡 면사무소 창 고	도곡면 효산리	763		신 축	66 (20평)	10,000

나. 처분대상

(건 물)

(단위 : ㎡)

처분건물명	소 재 지	지 번	사업구분	건축면적	소 요 예 산
농기계 창고	화순읍 삼천리	623	철 거	142.5	건물신축과병행실시
도곡면사무소 창 고	도곡면 효산리	763	"	25.9	"

다. 취득 및 처분 사유

(토 지)

- 취득할 토지는 소방차(2.5 t) 1대를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아 이양면에 배치하여 화재진압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, 소방차고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소방차고 신축을 위한 부지로서 당초 기승인된 100평을 238평으로 변경 매입코자 함.
- 능주면사무소 건물(2층계단)에 편입된 토지로서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능주면 청사의 철거가 요구되므로 군에서 매입 청사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함.

(건 물)

- 지도소의 농민교육용 강당이 노후 및 협소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본 예산에서 기 승인된 농기계 수리공작실 45평 신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60평으로 증축코자하며,
- 현재 노후되고 협소한 농기계 창고를 철거하고 본 자리에 2층건물을 신축 1층을 농기계 수리공작실로 활용하고 2층에 농민 및 학습단체회원 교육장으로 활용 U.R(유.알)시대에 대응한 농민의 기술교육 육성에 대응코자 함.
- 도곡면사무소 창고는 노후로 인한 균열 및 우수기 누수, 붕괴 위험이 있고 보관물 훼손으로 이용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청사 전면에 위치한 현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 후면에 조립식 판넬 구조로 신축하여 창고로 활용코자 함.

